구분	복지사업단	복 지 공 단	복 지 재 단	복 지 법 인
한계	· 공무원 조직의 한계 · 복지국과의 업무 중복 가능 · 복지국과의 업무 및 인력 재설계 필요 · 행자부 승인 필요 · 공무원 조직의 팽창 · 단기적으로 추진하는데 제약요인이 많음	· 지방공기업법상 조직설립 어려움	· 서울시의 통제권, 공공성격 한계 · 공공의 관리업무 불가능 · 지원, 진흥사업 중심 · 행정체계와 혼선 가능 · 조직운영 추가비용 · 노조문제 가능	· 복지재단의 한계점과 동일 · 그외에 기관성격이 직접사업 중심 · 현재 수탁기관과 동격이기 때문에 총괄기관으로 부적절

4. 결 론

○ 요컨대, 서울복지재단 설립의 기본취지에는 찬성하나 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고 서둘러 재단설립을 추진한다면, 재단의 기능이 단순 행정지원 업무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 그 설립의 의의를 찾을 수 없음

○ 따라서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우선 재단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역할 재정립 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임

○ 재단설립이든 다른 대안적 조직이든 서울시가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앞으로 재단설립 추진이 서울시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복지서비스지원·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됨

[참고] 복지재단 관련 우리 위원회 주요 추진사항

○ 사회복지협의회와 오찬간담회(2003. 3. 18)
- 협의회에서는 당해 단체와 기능중복, 사회복지시설 기본체계 구축 미흡 등으로 재단설립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 (가칭)서울복지재단 설립 구상안 보고(2003. 3. 19, 제140회 임시회)
-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 (가칭)서울복지재단 설립 추진관련 간담회(2003. 4. 18, 제141회 임시회)
- 재단설립 총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1부시장 불참, 복지재단 설립추진 준비기구에 복지여성국장이 제외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간담회 연기

○ (가칭)서울복지재단 설립 추진관련 간담회(2003. 5. 12)
- 용역결과 및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보고, 질의·답변

○ 행정1부시장님과 간담회(2003. 8. 27, 제144회 임시회)
- (가칭)서울복지재단과 설립과 관련한 우려사항 및 해소방안 등 보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2 중 직업교육의 일반과정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구 분	단 위	사용료 등	부 과 기 준
일반과정	1인 1월	15,000원	◦주당 15시간 이내

생활문화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구 분	단 위	사용료 등	부 과 기 준
생활문화수강료	1인 1월	15,000원	○ 1일 3시간 이내, 주 1일 기준

시설사용료의 부과기준란을 삭제하고, 기자재 사용료란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를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부스"로 한다.

제3조 본문중 "여성의 복지증진"을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으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생활문화교육 및 문화탐방 등 특별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운영

제5조의 본문중 "각호의 1"을 "각호"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창업센터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및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 수료생

②시장은 여성의 취업 및 창업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등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교육을 위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생에 대한 수강료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남성 또는 타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일정범위안에서 교육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타 신청자에 우선하여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문 및 중·고급직업교육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6.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7.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각호의 자가 직업교육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습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조제1호의 직업교육사업의 경우 시장은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직업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업교육생 자녀가 다른 이용자보다 보육실을 우

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중 "전문(고급과정) 기술교육과정"을 "전문 및 중·고급 직업교육과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육수강료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교육기간의 종료전까지 이를 후납하게 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3조 제1호의 교육사업중 특별프로그램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직접경비의 일부를 교육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프로그램 수강을 위하여 교육생이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사물함 등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의2호 및 제4의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업교육수강료, 보육실 이용료, 강당·교육실·회의실의 시설이용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보육실 이용료의 면제는 직업교육생의 아동에 한한다.

4의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4의3.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제13조 제2항중 "기술교육수강료"를 "직업교육수강료"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3조제1호의 직업교육사업으로서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운영되는 일반과정에 대하여는 당해 과정의 수강료를 20% 감면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강일부터 7일 이내 또는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 반환

2. 개강일부터 7일 경과후 또는 시설이용개시일 경과이후에 이용하지 아니 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신고월을 제외한 잔여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다만, 별표2의 사용료 등중 시설사용료는 신고일 이후의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②직업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급직업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동일과목의 중급 또는 고급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과정의 출석률에 따라 기납부한 수강료의 20%범위안에서 이를 반환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부·동부·중부·북부·남부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

3. 제1호 이외의 여성발전센터의 전문 및 중·고급 직업교육과정 운영

제19조 제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6호중 "기술교육생"을 "직업교육생"으로 하며, 동조제9호 및 제9의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자격 부여

9.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후납 및 분할납부 결정, 사용료 등 면제·감면, 징수한 사용료 등의 반환

9의3.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과정 운영 위탁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허가 등을 받아 사용중이거나 교육을 수강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등(제12조 관련)

구 분		단 위	사용료 등	부 과 기 준
직업 교육	일반과정	1인 1월	15,000원	○ 주당 15시간 이내
	전문, 중·고급과정	1인 1월	100,000원 이내	○ 강사료와 수강료 연동 (시장이 교육수요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당해과정의 총 수강료 수입이 당해 과정의 강사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00,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
생활문화		1인 1월	15,000원	○ 1일 3시간 이내, 주 1일 기준
특별 프로그램		1인 1월	실 비	○ 강좌개설에 따른 직접경비를 참여 예상인원 기준으로 산출, 적용
아동 교실 (방과후 교실 등)		1인 1기	10,000원	○ 1기당 정액 부과
보육실 사용료		1인 1월	7,500원	○ 교육수강시간에 한함
수영장 사용료	수강료	1인 1월	40,000원	○ 월 20시간 이내
	자유이용료	1인 1회	2,500원	
주차장 사용료		1대 1월	30,000원	○ 주차장을 외부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별도약정에서 정한 사용료 징수
		1대 1시간	1,000원	
시 설 사용료	강당	1회 1시간	10,000원	
	교육실 및 회의실	1회 2시간	5,000원	
창업보육 지원시설 사용료	창업보육실	㎡당/월		○ 보증금 1,000,000원 별도 ○ 관리비 별도
	창업부스	부스당/월		○ 보증금 500,000원 별도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